

별첨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2022년도 교육정책방향

2022. 2. 17.

금 융 위 원 회
금 융 정 보 분 석 원

목 차

I . 추진배경	1
II . 지난 해 교육실적	2
III . 보완할 점	3
IV . 2022년도 교육정책방향	5
1. 신규·취약부문에 교육역량 집중	6
2.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이행 지원	9
3. 교육정책 추진체계 내실화	11
V . 협조사항	12

〈 용 어 설 명 〉

<p>AML (자금세탁방지) : Anti-Money Laundering</p>	<p>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금융제도, 사법제도 및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p>
<p>CFT (테러자금조달금지) : Countering(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p>	<p>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 및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의 모집, 제공 등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p>
<p>CDD (고객확인 의무) : Customer Due Diligence</p>	<p>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검증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금융거래·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p>
<p>EDD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 Enhanced Due Diligence</p>	<p>고객별·상품별 자금세탁 위험도를 분류하고 자금세탁위험이 큰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고객확인, 즉 금융거래 목적 및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p>
<p>STR(의심거래보고)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p>	<p>특정 자금이 범죄 활동의 수익이거나 테러 자금조달과 관련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또는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고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p>
<p>CTR(고액현금거래보고) : Currency Transaction Report</p>	<p>일정금액(1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p>
<p>FIU(금융정보분석원) : Financial Intelligence Unit</p>	<p>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의심거래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국가기관</p>

I. 추진배경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교육은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제도 이행을 위한 예방조치의 핵심
 - 현장에서 의무이행기관 임직원의 업무 이해·숙지도와 검사요원의 전문성은 AML·CFT 이행의 전제요건
 - 국제적으로도 의무이행기관의 “지속적 임직원 교육”을 AML·CFT 정책의 필수사항으로 규정(FATF Recommendation 18 등)

- 그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의무이행기관·민간교육기관 등과 협업체계에 기반하여 원활한 교육훈련을 적극 지원
 - (FIU) 「특정금융정보법」에 근거하여, 매년 ‘교육정책방향’을 수립·발표하는 등 교육정책 총괄 기획·관리 역할 담당
 - 교육은 민간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민간교육전문기관* 등을 통해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 * 금융·보험·여신금융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 KRX준법감시협의회, 카지노협회
 - ** 우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AML 평가시 가점제공 등 인센티브 부여
 - (민간교육기관)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과정 개설·운영
 - (의무이행기관) 보고책임자는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교육(자체 또는 외부교육)을 실시
 - * 보고책임자는 교육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일자/대상/내용 등 기록·보존

- 최근 금융 디지털화, 새로운 자금세탁위험(가상자산 등) 증가 등 규제환경의 변화에 교육정책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
 - 고도화·전문화되는 자금세탁위험, 급변하는 제도 등을 현장종사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그간 교육실적, 검사·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AML·CFT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교육정책방향 설정

II. 지난 해 교육실적

◆ 최근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업권 확대, 교육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배경으로 AML 교육실적도 크게 증가

□ (민간교육전문기관 기준) '21년 중 교육 이수자는 총 3.8만명 수준으로, 전년(총 3.2만명) 대비 20% 이상 증가

○ 원격교육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여 코로나 이전 수준 상회

* [집합교육] '19년 2,367명 → '21년 2,424명 / [원격교육] '19년 2.8만명 → '21년 3.6만명

○ 세부 과정별로는 제도이해 등 개론 수준 과목보다는 새로운 AML 위험, 실무·사례 위주 교육 등에 대한 수요 증대

- 특히, 지난 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과 연계하여, '가상자산 AML 관련 과정' 개설이 늘어나고 이수자도 급증

- 자격증 부여과정(AML 핵심요원)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심거래보고(STR) 실무·사례중심 과정 이수도 크게 증가

< 주요 과정별 이수자 추이(명) >

	가상자산 AML	자격증 부여과정	STR 실무·사례
'20년	158	4,192	2,478
'21년	1,341 (+848%)	5,739 (+37%)	6,753 (+272%)

□ (금융회사등 기준) 자체·외부교육을 포괄한 금융회사별 1인당 평균 교육시간은 직원 기준 약 4.7시간으로 증가세 지속

※ '20년 교육시간 산정시에는 원격교육을 50%만 인정하는 등 기준이 상이하여 일률적 비교는 곤란하나, '21년 평균시간이 2배 가량 증가(2.3 → 4.7 시간)

○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카드·은행권 실적이 높은 반면, 전자금융·대부업, 창투사 등 신규·영세업권의 경우 평균 하회

* [평균 교육시간] 저축은행 8.9 > 은행 8.7 > 전자금융 3.7 > 대부업 2.0

○ 임원(경영진) 기준 평균 교육시간은 약 2.5시간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교육이 관리자 보다 실무직원에 집중되는 경향

Ⅲ. 보완할 점

◆ 양적 교육확대에도 불구하고, 업권간 교육격차 심화, 검사 지적사항 반복, 공급자 위주 교육 등 개선 필요사항 제기

① 기존 금융회사와 신규·영세업권 간 교육 양극화 심화

- 최근 의무가 부과된 전자금융·대부업자, 투자일임업권 등의 평균 직원 교육시간은 은행 대비 20~40% 수준에 불과
 - * (예) 은행권 대비 교육시간(%): 대부업 43, 투자일임 25, 자산운용 20
- 차별화된 상품·서비스에 부합한 교육과정 부족 지적 등 제기
- 특히, 규모가 영세한 환전영업자, P2P 업권 등은 자체 교육 역량 미흡, 맞춤형 교육과정 부재 등으로 교육진행에 애로

② 검사·평가시 지적된 취약부문 개선을 위한 연계교육 미흡

- 지난 3년간 검사결과, 내부보고체계·CTR 부적정(상호금융), 고객확인 의무 소홀(우체국) 등 업권별 동일 지적사항 반복
- STR 교육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고 충실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
 - * AML 평가결과, 일부 업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STR 충실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취약부문 교육 성과를 AML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교육-평가」간 환류체계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

③ 현행 교육 패러다임을 보다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

- 그간 정부·교육기관 등 공급자 위주에서 벗어나, 교육정책 전문성 제고, 현장의견 반영 등을 위한 추진체계 개편 요구
-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수요에도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

√ 최근 자금세탁위험의 고도화·복잡화 등에 따라 검사수탁기관 검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심화교육 강화 및 교육 권고시간(연 2시간) 적정화 요구 등 제기

√ 수요자 입장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품질관리 강화 등 필요

참고 1 2021년 검사·평가결과

① **(평균 교육시간)** AML 평가결과, 카드·저축은행·은행 등 기존 업권은 다른 업권 대비 충분한 교육훈련 실시(평균 8시간 이상)

- 반면, 전자금융·대부업과 같은 신규업권, 투자일임·창투사 등 영세업권의 경우 교육훈련 실적이 평균을 하회
- 환전영업자(총 1,532개)의 경우, 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자 비중(약 42%)이 높은 등으로 자체·외부교육이 쉽지 않은 여건

< 직원당 평균 교육시간 (괄호는 은행 대비, '21년) >

저축은행	은행	카드	전자금융	대부	투자일임	자산운용	창투	전체 평균
8.9	8.7	8.2	3.7	2.0	1.6	1.8	1.0	4.7
(103%)	(100%)	(94%)	(43%)	(24%)	(18%)	(20%)	(11%)	-

② **(검사 지적사항)** 상호금융·우체국의 경우, 그간 내부보고 체계 구축, 교육·연수, 고객확인제도 관련 사항이 반복 지적

- 특히, 내부보고체계 미흡, 고객확인제도(CDD) 소홀, 고액현금 거래보고(CTR) 관련지적 비중이 높은 편

※ '19년 이후 업권별 검사 지적사항 비중은 큰 변화없이 유지

< 검사대상 업권별 지적사항 비중 ('21년) >

	농협	수협	산림	신협	새마을	우본
내부보고체계	61%	45%	2%	-	73%	-
교육 및 연수	4%	5%	16%	22%	2%	11%
STR	30%	-	15%	7%	5%	7%
CTR	-	-	-	40%	11%	13%
CDD	5%	50%	67%	31%	10%	70%

③ **(STR 충실도)** STR 경험이 축적된 은행·카드·증권 등 기존 업권은 STR 충실도(FIU 평가)가 다른 업권 보다 상대적으로 높지만, 기초 분석을 등은 그리 높지 않아 STR 품질개선 노력 요구

- 한편, 신규 업권 및 상호금융 등 영세업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STR 충실도가 낮아 관련 기초교육 등 강화 필요

< STR 충실도 (AML 평가, '21년) >

	은행	카드	증권	농협	저축은행	새마을	신협	전체 평균
충실도(점수)	6.3	4.6	2.7	1.7	0.9	0.2	0.1	1

IV. 2022년도 교육정책방향

- ◆ 한정된 정책역량을 취약부문에 우선 집중 → 신규·영세업권 맞춤형 교육, 반복 취약부문 개선, STR 품질제고
- ◆ 수요자 중심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권고시간 적정화, 민간교육 품질관리 강화 등 교육 인프라 개편 병행

신규·취약부문 교육역량 집중

- ▶ 신규·영세업권 맞춤형 교육
- ▶ 검사·평가시 반복 취약부문 연계교육 강화
- ▶ STR 품질제고 교육 내실화

효과적인 제도이행 지원

- ▶ 교육 권고시간 적정화
- ▶ 검사수탁기관 검사원 역량·전문성 제고
- ▶ 민간교육 품질관리 체계화

교육정책 추진체계 내실화

- ▶ 수요자 중심의 교육추진체계(교육자문위원회) 구축
- ▶ '교육-평가'간 환류강화로 교육정책 추동력 확보

1 신규·취약부문에 교육역량 집중

1 신규 편입업권, 영세업권 등 교육 사각지대 해소

□ 자체교육 역량이 낮은 신규·영세업권을 대상으로 민간교육전문기관을 통해 간소화·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 마련·배포

① **(환전영업자)** 높은 영세업자 비중 등을 고려, 필수 교육사항 위주로 1시간 내외의 교육 동영상* 개발(금융연수원, 2분기)

* 의무이행기관(총 1,532개)이 많고, 개인영업자(651개) 및 호텔·숙박경영업자(510개)가 대부분인 점 등을 감안하여 전달의 용이성에 초점

- 자금세탁방지 검사시 주요 지적사항인 CTR을 포함하여, 고객 확인·STR 등 외환거래 실무 및 사례위주로 구성

② **(전자금융·대부업자, P2P)** 신규 상품·서비스의 자금세탁위험 등을 충실히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마련(금융연수원, 2분기)

- 전달이 용이한 동영상 형태로 제작(2시간 내외)하되, 비대면 거래 고객확인, STR 유형·우수사례 등에 중점

③ **(집합투자·투자일임업자)** 교육실적이 미흡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전담기관(금융투자교육원)을 통한 교육이수 등 독려

- 업무특성에 기반한 과정을 개설하되, 집합투자와 자금세탁 위험이 유사한 벤처조합·창투사도 대상에 포함(중기부 등 협조)

□ 검사수탁기관, 업권별 협회 등을 통해 신규·영세업자 교육진행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업권별 협회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과정 홍보 → 실적점검 → 개선 필요사항 발굴” 등으로 이어지는 관리체계 구축

※ 민간 부문에서 교육수요 충족이 어려운 취약·영세업자 등에 한해 FIU가 직접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중장기 검토

2 반복 검사 지적사항 등 취약부문 연계교육 강화

- 그간 반복된 검사 지적사항, AML 평가시 미흡항목 등에 대해 업권별로 권고과목 교육이수(☞ 참고 2) 또는 자체교육 실시
- ① (공통) 전반적으로 일반 직원에 비해 교육이수 실적이 저조한 경영진·이사회 대상 교육 강화
 - *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에 최종 책임을 지는 만큼 교육에 대한 인식제고 필요
- ② (상호금융) 내부보고체계 미흡, CTR 지연보고, 고객확인 의무 소홀 등 소규모 조합의 반복 지적사항에 대응한 교육 확대
 - 특히, 업권별로 비중이 높은 지적사항에 대한 집중교육 필요
- ③ (은행·카드·증권) 기존 업권의 경우, AML 의무 이행 고도화를 위한 STR 품질제고, CTR 정교화 등 교육 지속
- ④ (저축은행·보험 등) 영업점 실무자를 중심으로 STR 실무과정, 고객확인 제도 교육 등 이수 권고

3 의심거래보고(STR) 품질제고 교육 내실화

- STR 교육이 실제 현장에서 도움이 되고 실질적 품질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FIU가 전방위적으로 지원
- (STR 추출·보고) 최근 신규 편입업권 확대, 신종 자금세탁위험 증가 등을 반영하여 '의심거래 참고유형' 개정·배포(2분기)
 - 아울러,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토록 STR 작성요령, 업권별 우수사례 등을 망라한 '교육 소책자' 작성·제공(2분기)
- (민간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보다 실무·사례 위주로 개편하고, 교육 전문성·적시성 제고 등을 위한 강사 적극 지원
 - STR 건수 대비 충실도 미흡 업권 대상 방문교육·간담회를 실시하고, 비은행·신규 업권 맞춤형 교육 개설 등 유도

참고 2 업권별 교육이수 권고과목

- 반복된 검사·AML 평가 미흡사항 개선 등을 위해 업권별로 교육이수 권고과목 등을 토대로 자체 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

< 교육이수 권고과목 목록 >

업권	교육대상	이수 권고과목*	비고
공통	임원	- 경영진 대상 AML/CFT 교육	사이버
	AML/CFT 업무담당 실무자	- 자금세탁방지 핵심요원(전문) - 검사기법·지적사례	집합 / 사이버
	독립적감사 업무담당 실무자	- AML/CFT 검사인력 실무 - 검사기법·지적사례	집합 / 사이버
은행·증권·카드	STR 모니터링 직원, 영업점 보고책임자 및 실무자	- STR 품질제고 과정 및 실무과정 - 자금세탁방지 핵심요원(전문)	집합 / 사이버
저축은행·보험	영업점 실무자	- STR 품질제고 과정 및 실무과정 - 고객확인제도(CDD/EDD) 실무과정	집합 / 사이버
상호금융 및 금고	STR 모니터링 직원, 조합·금고 보고책임자 및 실무자	- STR 품질제고 과정 및 실무과정	집합 / 사이버
	영업점 실무자	- 고객확인제도(CDD/EDD) 실무과정 - 자금세탁방지제도(AML/CFT, CTR 등)	집합 / 사이버
우체국	영업점 실무자	- 고객확인제도(CDD/EDD) 실무과정 - 자금세탁방지제도(AML/CFT, CTR 등)	집합 / 사이버
카지노	영업장 실무자	- 자금세탁방지 실무과정(CDD/EDD 등)	사이버

* 상기 이수권고 과목명은 기 개설과목명을 예시로 표기, AML을 전문으로 교육하며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외부 집합교육 유사과정 등 대체수강 가능

2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이행 지원

1 자금세탁위험에 대응하여 교육 권고시간(年 2시간) 적정화

- ① (교육시간) '21년 직원 평균 교육시간(4.7시간) 등을 감안, 현행 권고시간(2시간)을 '23년까지 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 [참고] 전자금융법상 정보보호 의무교육 시간은 연 6시간 수준(일반직원 기준)

- ② (직무별 세분화) 자금세탁방지 관련 높은 업무 이해도가 필요한 AML/독립적 감사 담당부서 직원은 권고시간 가산

< 교육 권고시간 운영방안 >

	~'21년	'22년	'23년
일반 임직원	2시간	4시간	6시간
AML·감사 담당부서 직원		8시간	12시간

- ③ (이행지원) 개편된 기준을 AML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민간 교육전문기관과 협업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과정 지원*

* (i) 임원·이사회 대상 프로그램 확대, (ii) 신규·영세업권 대상 맞춤형 교육과정 지속 개발·보급, (iii) AML 담당직원 대상 심화 전문가과정 신설 등

2 검사수탁기관 검사원의 전문성 및 역량 제고

- 검사대상기관이 많아 검사밀도가 높은 상호금융중앙회·우본 검사원에 특화된 교육과정 신설 추진("검사아카데미", 2분기)

※ 종전 검사원 교육과정에 노하우가 있는 금융연수원을 통해 협의·추진하되, 현장 목소리('22.1월 상호금융·우본 검사역 간담회) 등을 충분히 반영

- (교육시간 적정화) 검사기법·실무 등에 대한 실질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전 7시간 →) 최소 3일 이상으로 편성

- (체감교육 강화) 사전준비, 검사기법 및 주요 지적사례, 검사 문서 작성 등 검사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실무 위주로 교육

- 구체적 사례를 통한 검사 모의실습 등 체험형 콘텐츠 강화

< 검사아카데미 교육과정(案) >

① 사전준비	√ 검사대상 선정, 사전자료요구 목록, 체크리스트 준비 등
② 검사기법	√ 검사 조치사례, 데이터를 활용한 지적기법, 업권별 취약점 등
③ 문서작성	√ 문답서·경위서 작성, 증빙자료 징구, 검사보고서 작성 등
④ 사후관리	√ 지적사항별 조치기준,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등

□ 상호금융·우본의 전문검사 확대와 연계하여 검사원 교육이수를 적극 권고*하고, 추후 다른 업권 검사인력까지 교육확대 검토

* 사전수요 신청자는 우선 수강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검사수탁기관 전문 인력 산정시 검사아카데미 이수자를 포함토록 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③ 민간교육기관 프로그램 품질관리 체계화

□ 민간 전문가(교육자문위원회)를 통해 AML 이행평가지 가점이 부여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주기적 평가 및 품질관리 실시

※ 그간 교육은 민간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우수 프로그램 이수시 인센티브를 부여했으나, 프로그램 사후관리 절차·기준 등은 미비

① (평가대상) 금융연수원 등이 운영 중인 8개 교육프로그램*

* 자금세탁방지 핵심요원, AML 전문가 과정, 각종 자격증 프로그램 등

② (평가방법) 매년 교육자문위 주도로 내용의 적정성·정확성·적시성, 구성의 적합성, 전달의 효과성 등 다양한 항목 평가

③ (사후관리)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내용·구성 등에 대한 개선 권고, 평가가점 수준 조정 등 사후조치 실시

□ 신규 우수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민간 교육기관 신청을 받아 교육자문위 평가 후 가점부여 여부 등 결정

○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교육기관으로부터 일괄 신청을 받아 심사하는 방안 등 검토(→ 세부 운용기준 등은 추후 마련)

3 교육정책 추진체계 내실화

1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위한 「교육자문위원회」 구성·운영

① (구성) 자금세탁방지 교육정책의 전문성·중립성 확보 등을 위해 민간 전문가(9인*)로 구성된 「교육자문위원회」 신설

* 학계·연구원·법조계·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인력으로 균형있게 구성

② (기능) AML 교육정책 전반에 걸친 포괄적 자문역할 담당

- 매년 「교육정책방향」 수립에 참여하는 한편, 민간 교육과정 평가 및 개선권고 등 품질관리 주도

- 교육 체계성·효과성 제고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방향 설정

- 민간교육전문기관의 교육실적, 전문성·특성 등을 감안하여, 기관별 역할분담방안* 등 검토

* (예)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업권별로 주요 교육담당기관 지정, 내부통제/보고의무 이행/검사업무 등 AML 분야별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

③ (운영) 반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 등 필요시 수시 개최
→ 추후 운영성과 등을 보아가며 FIU 규정에 명문화 추진

2 교육 - 평가간 환류강화 → 교육정책 이행 추동력 확보

□ 「교육정책방향」을 충실히 반영하여 AML 평가지표 개선 추진

○ 정책이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교육시간 등) 및 취약부문(고객확인, STR 충실도 등) 관련지표·배점 조정

* 추후 연구용역, 전문가 TF 등을 거쳐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 예정(2분기)

※ AML 평가지표 개정 추진방향 (예시)

√ 교육 권고시간 상향에 맞추어 임직원 교육 평가기준 변경, AML·감사 담당부서 직원의 교육시간 별도 평가 등

√ 고객확인 이행, CTR 적시 보고, STR 충실도 등 취약부문 연관지표 배점 조정

V. 협조사항

- 차질없는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업권별 협회/검사수탁기관 - 교육전문기관 - FIU」간 유기적 협업이 필수적
 - (개별 금융회사등) 교육 권고시간, 교육권고 이수과목, 교육 캘린더(☞ 불입) 등을 참조하여 자체 교육계획 수립·이행
 - (업권별 협회 등) 회원사·단위조합 등 교육실적 점검 및 독려, 「유관기관협의회」 등을 통해 FIU와 진행상황 수시 공유
 - (검사수탁기관) 검사시 취약부문 교육 여부 등을 중점 점검
 - (교육전문기관) 신규·영세업권 맞춤형 교육, 검사아카데미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지속 개발·공급

< 세부과제별·기관별 협조사항 >

세부과제	주체	협조사항	시기
1-① 신규·영세업권 맞춤형 교육	금융연수원	- 환전영업자, P2P, 전자금융·대부업자 대상 동영상 교육과정 개발	2분기
	금융투자교육원	- 집합투자업자 등 교육방안 마련	2분기
	업권별 협회 등	- 맞춤형 교육홍보 및 이수실적 점검	매분기
1-② 취약부문 연계 교육 강화	검사수탁기관	- 취약부문 교육 등 중점 관리·점검	상시
2-① 교육 권고시간 적정화	민간교육기관	- 다양한 수요에 부응한 교육과정 개설	상시
2-② 검사원 교육	금융연수원	- 검사아카데미 과정 협의·신설	2분기
	상호금융중앙회 우정사업본부	- 희망자 사전 수요조사 및 검사원 교육이수 적극 권고	2분기 ~

1. 집합교육

시기(월, 일)		집합교육 과정명	민간금융교육기관
1	25	자금세탁방지제도(AML/CFT)	금융투자교육원
2	23-24	AML/CFT 실무과정	KRX준법감시협의회
3	10	STR 품질제고	금융연수원
3	22-24	자금세탁방지핵심요원(전문)	금융연수원
3	23	AML/CFT 실무[보험업권]	보험연수원
4	13	AML/CFT 검사인력실무	금융연수원
4	13	가상자산사업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실무	보험연수원
4	13-14	AML/CFT 실무과정	KRX준법감시협의회
4	19	의심거래보고(STR)실무	금융투자교육원
4	20	STR 품질제고	보험연수원
4	26	AML/CFT 실무	금융연수원
5	2-3	AML/CFT 실무	카지노협회
5	25-26	자금세탁방지핵심요원[전금융권]	보험연수원
5	30-31	가상자산사업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실무	금융연수원
6	2	미국현지AML/CFT실무	금융연수원
6	9	STR 품질제고	금융연수원
6	16	STR 품질제고	KRX준법감시협의회
6	21	자금세탁방지제도(AML/CFT)	금융투자교육원
6	22	AML/CFT 실무[전금융권]	보험연수원
7	6-7	자금세탁방지핵심요원[보험업권]	보험연수원
7	13	자금세탁방지TBML실무	금융연수원
7	26-28	자금세탁방지핵심요원(전문)	금융연수원
8	11	AML/CFT 검사인력실무	금융연수원
8	18	STR 품질제고	KRX준법감시협의회
8	25	AML/CFT 실무	금융연수원
8	29	AML/CFT 실무	카지노협회
8	30	의심거래보고(STR)실무	금융투자교육원
9	15	STR 품질제고	금융연수원
9	21	AML/CFT 실무[전금융권]	보험연수원
10	11-13	자금세탁방지핵심요원(전문)	금융연수원
10	19-20	AML/CFT 실무과정	KRX준법감시협의회
10	27	가상자산사업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실무	보험연수원
10	31	AML/CFT 실무	카지노협회
11	3	AML/CFT 검사인력실무	금융연수원
11	10	AML/CFT 실무	금융연수원
11	22	자금세탁방지제도(AML/CFT)	금융투자교육원
11	23	AML/CFT 실무[전금융권]	보험연수원

2. 사이버교육

민간금융 교육기관	교육 일정	시기
금융연수원 (www.kbi.or.kr)	자금세탁방지 최신 사례	8월
	자금세탁방지 핵심요원(기초)	5, 7, 8, 9월
	고객확인제도(CDD/EDD) 실무	3, 5, 8, 11월
	의심거래보고(STR) 실무	3, 5, 8, 11월
	AML/CFT 검사기법 및 지적사례	3, 5, 8, 11월
	경영진이 알아야 할 자금세탁방지 핵심포인트	3, 5, 8, 11월
보험연수원 (aml.in.or.kr)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사례 연구	매월 1일 개강
	경영진을 위한 핵심 자금세탁방지제도	
	보험회사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이해	
	실무에 바로 활용하는 고객확인의무(CDD) 수행	
	자금세탁방지업무 감독 검사 및 사례	
	자금세탁 전제범죄의 이해와 유형론	
	최신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해	
STR 제도 개요 및 유형 이해		
여신금융 연수원 (educrefia.or.kr)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이해	연간 상시
금융투자 교육원 (www.kifin.or.kr)	궁금타파! 핵심만 골라 배우는 자금세탁방지 에센스	연간 상시

※ 상기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일정은 금융정보분석원, 민간금융교육 기관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